

군포도시공사 제9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명희



2020년 10월 15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57호

##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14조 제1항의 “ 및 ”을 “ 또는 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 “동일 직종 및 직급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직원을”로 한다.

[별표 1]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직종별 직급 및 직위(제15조 관련)

업무직	-	담당
-----	---	----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이 태 권 (390-7615)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4조(수습임용)</b> ①신규로 채용된 직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한다.</p> <p>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및 인력수급상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사장이 판단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 &lt;생략&gt; 1. ~ 4. &lt;생략&gt;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	<p><b>제14조(수습임용)</b> ①-----</p> <p>-----.</p> <p>다만, -----경력자 또는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&lt;현행과 같음&gt; 1. ~ 4.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③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<b>제20조(겸직)</b> 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<u>동일 직종 및 직급의 범위 안에서</u> 겸직시킬 수 있다.</p>	<p><b>제20조(겸직)</b> ----- 경우 <u>직원을</u> 겸직시킬 수 있다.</p>

# 현행

[별표 1]

## 직종별 직급 및 직위(제15조 관련)

직종	직급	직위
일반직	2 급	본부장, 부장, 팀장
	3 급	본부장, 부장, 팀장, 담당
	4 급	
	5 급	부장, 팀장, 담당
	6 급	담당
	7 급	
기능직	1 급	부장, 팀장, 담당
	2 급	담당
	3 급	

# 개정안

[별표 1]

## 직종별 직급 및 직위(제15조 관련)

직 종	직 급	직 위
일반직	2 급	본부장, 부장, 팀장
	3 급	본부장, 부장, 팀장, 담당
	4 급	
	5 급	부장, 팀장, 담당
	6 급	담당
	7 급	
기능직	1 급	부장, 팀장, 담당
	2 급	담당
	3 급	
<u>업무직</u>	⋮	<u>담당</u>